
Policy and Law Report _Vol.145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7.18.~ 2022.7.24) -

July 25,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p>과학 기술정보 통신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50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발표 - 2차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 개최 <p>과학기술통신부는 제2차 디지털 탄소중립협의회를 열고, 주요 디지털 기업 및 협·단체들과 함께 「2050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선언문」을 발표함</p> <p>디지털 탄소중립 협의회는 산업계와 함께 디지털산업의 탄소배출 저감과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방안을 논의하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디지털 분야 탄소중립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회의체로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됨</p> <p>2050 디지털 탄소중립 공동선언문 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디지털 부문의 에너지 효율화 및 환경·사회·투명(ESG) 경영 강화 ② 디지털 기술 활용을 통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 실현에 앞장 ③ 친환경 성장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만들기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강화 ④ 산업·경제·사회 등 전 영역의 탄소중립 성과 확산을 위해 노력 	<p>2022-07-19</p>
<p>산업통상 자원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 개소 <p>산업통상자원부는 중소·중견기업의 미세먼지 저감 활동을 맞춤형으로 지원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산업환경개선지원센터」를 개소함</p> <p>주요 역할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중소·중견기업의 제조제품(여과필터, 촉매 등)에 대한 성능검증 및 신뢰성 평가 지원 ②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제조 사업장별 맞춤형 컨설팅, 미세먼지 배출원인 분석 및 설비검증 등 지원* <p><small>* 미세먼지 발생 및 배출량 실시간 모니터링, 정밀측정·분석, 개선방안 도출 등</small></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③ 미세먼지 저감설비를 보유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비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 ④ 산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전문인력 양성 교육, 표준개발 및 확산 등이 있음 	<p>2022-07-18</p>

부처	내용	일시
식품 의약품 안전처	<p>•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 개최</p> <p>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의약 분야 관련 업체·협회·학계·소비자단체가 함께하는 ‘의약 분야 규제혁신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함</p> <p>의약 분야 산업 활성화와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규제혁신과제를 발굴했으며, 이번 토론회는 주요 규제혁신과제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됨</p> <p>의약 분야 주요 규제혁신과제는</p> <p>① 신산업 지원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시 품목 분류제도 도입 과제 - 혁신기술 바이오의약품 신속 개발지원 과제 <p>② 민생불편·부담 개선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 사전검토 대상 확대 과제 - 의약품 e-label 단계적 도입 과제 <p>③ 국제조화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이오의약품 시판 후 약물감시 시스템 개선 과제 - 국가 출하 승인 시료 채취 절차의 민간 이양 과제 <p>④ 절차적 규제 개선 분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외진단기기 임상적 성능시험 신청자료 간소화 과제 - 화장품 원료 사용에 대한 보고 의무 폐지 과제 	2022-07-21
금융 위원회	<p>•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발표 -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p> <p>쑈 산업이 디지털 대전환중인 상황에서 디지털 신산업 창출 등을 위한 규제혁신을 범정부적 핵심과제로 추진 중인 바, 금융위원회는 이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하고, 시장과 정부가 협력하여 금융규제혁신을 추진하기 위한 민간 기구로서, 경제·금융·디지털·법률·언론을 대표하는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출범함</p> <p>제1차 회의에서는 박병원 前 한국경영자총협회 명예회장을 의장으로 선임하고,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 등에 대해 논의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금융산업의 디지털화를 가로막는 규제로서 현장의 개선요구가 많은 금산분리 규제에 대해, 금융회사의 IT·플랫폼 관련 영업과 신기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업무범위와 자회사 투자 제한을 개선하는 방안 우선 검토</p>	2022-07-19

부처	내용	일시																													
	<p>② 전업주의 규제 합리화 측면에서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서비스를 시범 운영하여 검증하는 한편, 금융회사들이 금융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p> <p>③ 마이데이터, 오픈뱅킹, 규제샌드박스 제도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가상자산, 조각투자 등 디지털 신산업에 대한 규율체계를 정립하는 등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인프라 구축</p> <p>④ 신탁제도 개선, 대체거래소 도입 등을 통해 자본시장 인프라를 정비하고 투자자 불편 해소, ESG 공시제도 정비 등을 통해 투자 활력 증진</p> <p>⑤ 규제혁신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이 중요하며 금융감독원이 중심이 되어 개선방안 마련</p> <p style="text-align: center;">< 금융규제혁신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세부과제 ></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1.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td> </tr> <tr> <td>①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td> </tr> <tr> <td>①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td> </tr> <tr> <td>②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td> </tr> <tr> <td>③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td> </tr> <tr> <td>④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td> </tr> <tr> <td>②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td> </tr> <tr> <td>⑤ 업무위탁 제도 개선</td> </tr> <tr> <td>⑥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개선</td> </tr> <tr> <td>⑦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td> </tr> <tr> <td>⑧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td> </tr> <tr> <td>③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td> </tr> <tr> <td>⑨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td> </tr> <tr> <td>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td> </tr> <tr> <td>⑪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td> </tr> <tr> <td>⑫ 보험그룹 내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2.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td> </tr> <tr> <td>④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td> </tr> <tr> <td>⑬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td> </tr> <tr> <td>⑭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td> </tr> <tr> <td>⑮ 오픈뱅킹을 오픈파이낸스로 확대 (참여업권 확대 등)</td> </tr> <tr> <td>⑯ 제도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td> </tr> <tr> <td>⑤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td> </tr> <tr> <td>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td> </tr> <tr> <td>⑱ 디지털 증권 규율체계 확립</td> </tr> <tr> <td>⑲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td> </tr> <tr> <td style="background-color: #f2f2f2;">3.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td> </tr> <tr> <td>⑥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td> </tr> <tr> <td>⑳ 공모펀드 활성화</td> </tr> </table>	1.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①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②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③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④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②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⑤ 업무위탁 제도 개선	⑥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개선	⑦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⑧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③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⑨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⑪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⑫ 보험그룹 내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2.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④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⑬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	⑭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	⑮ 오픈뱅킹을 오픈파이낸스로 확대 (참여업권 확대 등)	⑯ 제도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⑤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⑱ 디지털 증권 규율체계 확립	⑲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3.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⑥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	⑳ 공모펀드 활성화	
1. 디지털화, 빅블러 현상에 대응하여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 촉진																															
① 금융-비금융간 서비스·데이터 융합 촉진																															
① 자회사 투자 제한 완화																															
② 금융회사의 부수업무 규제 완화																															
③ 비금융정보 활용을 통한 보험서비스 고도화																															
④ 카드사의 데이터 활용 규제 개선																															
② 외부자원 및 디지털 신기술 활용 활성화																															
⑤ 업무위탁 제도 개선																															
⑥ 비대면 실명확인 제도 개선																															
⑦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보험모집 규제 개선																															
⑧ 보험사의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③ 다양한 사업모델이 가능한 유연한 규제체계 구축																															
⑨ 디지털 유니버설 뱅크 관련 제도 개선																															
⑩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금융상품 중개 도입 검토																															
⑪ 카드사의 플랫폼 비즈니스 활성화																															
⑫ 보험그룹 내 1사1라이선스 규제 완화																															
2. 디지털 금융 혁신을 위한 신기술 활용 인프라 구축																															
④ Data, AI 등 신기술 활용 기반 혁신																															
⑬ 마이데이터 고도화를 위한 정보제공범위 확대 추진																															
⑭ 신기술 도입 촉진을 위한 망분리·클라우드 규제 개선																															
⑮ 오픈뱅킹을 오픈파이낸스로 확대 (참여업권 확대 등)																															
⑯ 제도화 예측가능성 제고 등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⑤ 균형 잡힌 신산업 규율체계 구축																															
⑰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⑱ 디지털 증권 규율체계 확립																															
⑲ 금융회사의 가상자산 관련 업무 영위 허용 검토																															
3. 우리 경제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자본시장 선진화																															
⑥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성 확대 및 경쟁 촉진																															
⑳ 공모펀드 활성화																															

부처	내용	일시																				
	<table border="1"> <tr><td>㉑ 신탁재산 범위 확대 등 신탁의 운용 자율성 강화</td></tr> <tr><td>㉒ 펀드 판매보수 책정·수취시 판매사 자율성 확대</td></tr> <tr><td>㉓ 대체거래소(ATS) 도입</td></tr> <tr><td>㉗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td></tr> <tr><td>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제도 정비</td></tr> <tr><td>㉕ 대고객RP 담보 확대 등 채권시장 투자환경 규제 완화</td></tr> <tr><td>㉖ 장외시장(비상장주식) 거래 규제 합리화</td></tr> <tr><td>㉗ 영문 공시 등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 공시 제도 개선</td></tr> <tr><td>㉘ ESG 공시 제도 정비</td></tr> <tr><td>㉙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td></tr> <tr><td>㉚ 회계법인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금지 규제 합리화</td></tr> <tr><td>㉛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td></tr> <tr><td>㉜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td></tr> <tr><td>4. 감독행정 개선</td></tr> <tr><td>㉝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td></tr> <tr><td>㉞ 금융행정지도 혁신적 개선</td></tr> <tr><td>㉟ 감독·검사·제재 행정 개선</td></tr> <tr><td>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신고절차 개선</td></tr> <tr><td>㊲ 해외진출 관련 국내외 필수정보 제공·지원</td></tr> <tr><td>㊳ 특수관계인 범위 등 대주주 규제 합리화</td></tr> </table>	㉑ 신탁재산 범위 확대 등 신탁의 운용 자율성 강화	㉒ 펀드 판매보수 책정·수취시 판매사 자율성 확대	㉓ 대체거래소(ATS) 도입	㉗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제도 정비	㉕ 대고객RP 담보 확대 등 채권시장 투자환경 규제 완화	㉖ 장외시장(비상장주식) 거래 규제 합리화	㉗ 영문 공시 등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 공시 제도 개선	㉘ ESG 공시 제도 정비	㉙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	㉚ 회계법인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금지 규제 합리화	㉛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㉜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	4. 감독행정 개선	㉝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	㉞ 금융행정지도 혁신적 개선	㉟ 감독·검사·제재 행정 개선	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신고절차 개선	㊲ 해외진출 관련 국내외 필수정보 제공·지원	㊳ 특수관계인 범위 등 대주주 규제 합리화	
㉑ 신탁재산 범위 확대 등 신탁의 운용 자율성 강화																						
㉒ 펀드 판매보수 책정·수취시 판매사 자율성 확대																						
㉓ 대체거래소(ATS) 도입																						
㉗ 자본시장 제도정비를 통한 투자수요 활성화																						
㉔ 글로벌스탠다드에 맞는 자본시장 제도 정비																						
㉕ 대고객RP 담보 확대 등 채권시장 투자환경 규제 완화																						
㉖ 장외시장(비상장주식) 거래 규제 합리화																						
㉗ 영문 공시 등 외국인 투자자 친화적 공시 제도 개선																						
㉘ ESG 공시 제도 정비																						
㉙ 상장기업 등 일반기업 부담 완화																						
㉚ 회계법인 재무제표 작성 관련 자문금지 규제 합리화																						
㉛ 소규모 상장사 내부회계 외부감사 면제																						
㉜ 상장폐지 요건 합리화																						
4. 감독행정 개선																						
㉝ 행정지도 및 감독·제재·검사 관행 개선																						
㉞ 금융행정지도 혁신적 개선																						
㉟ 감독·검사·제재 행정 개선																						
㊱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관련 신고절차 개선																						
㊲ 해외진출 관련 국내외 필수정보 제공·지원																						
㊳ 특수관계인 범위 등 대주주 규제 합리화																						
	<p>•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 발표 - 2년간 41.2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자금 등 공급</p> <p>정부는 일상회복 과정에서 코로나19 대응 긴급·일시적 조치가 종료되더라도 자영업자 등이 금융애로가 없도록 선제적·종합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금융·영업상황에 맞는 80조원 규모의 맞춤형 종합 지원방안 마련</p> <p>① 상환능력이 있는 차주에 대해서는 유동성 및 경쟁력제고 지원자금을 41.2조원 규모로 공급</p>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right: 10px;"> 맞춤형 자금지원 2년간 41.2조원 공급 </div>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width: 30px;">➔</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 padding: 5px;">유동성 공급 10.5조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 padding: 5px;">대출 7.2조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fff9c4; padding: 5px;">보증 3.3조원</td> </tr> <tr> <td style="width: 30px;">➔</td> <td style="background-color: #ffe0b2; padding: 5px;">경쟁력 강화 29.7조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ffe0b2; padding: 5px;">대출 18.3조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ffe0b2; padding: 5px;">보증 11.4조원</td> </tr> <tr> <td style="width: 30px;">➔</td>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padding: 5px;">재기지원 1.0조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padding: 5px;">대출 0.5조원</td> <td style="background-color: #e8f5e9; padding: 5px;">보증 0.5조원</td> </tr> </table> </div>	➔	유동성 공급 10.5조원	대출 7.2조원	보증 3.3조원	➔	경쟁력 강화 29.7조원	대출 18.3조원	보증 11.4조원	➔	재기지원 1.0조원	대출 0.5조원	보증 0.5조원	2022-07-22								
➔	유동성 공급 10.5조원	대출 7.2조원	보증 3.3조원																			
➔	경쟁력 강화 29.7조원	대출 18.3조원	보증 11.4조원																			
➔	재기지원 1.0조원	대출 0.5조원	보증 0.5조원																			

부처	내용	일시
	<p>② 고금리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에 대해서는 8.5조원 규모의 저금리 대환상품을 제공 (8월중 발표)</p> <p>③ 자력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서는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해 원리금 감면 등 채무조정 지원 (8월중 발표)</p> <div data-bbox="363 577 1278 987"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10px;"> <p>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p> <pre> graph TD A[80조원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 B[유동성·경쟁력 자금수요] A --> C[고금리 부담] A --> D[상환애로] B --> E[정책자금 공급 41.2조원] C --> F[저금리 대환 8.5조원] D --> G[새출발기금 30조원] </pre> </div>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국도 교통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2022.8.4. 시행 예정, 다만 제86조제1항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은 2022.7.19. 시행) <p>건설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설공사와 관련한 불공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신고하는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8823호, 2022. 2. 3. 공포, 8. 4. 시행)됨</p> <p>이에 따라, 불공정행위사실과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신고자에게는 200만원 이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국토관리청에 포상금지급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p> <p>중대건설현장사고의 조사업무는 대부분 국토교통부장관이 수행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건설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처분 권한 중 ‘고의·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하여 중대건설현장사고를 발생시킨 건설사업자’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2022-07-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7.19. 시행, 다만 제34조제5항·제6항 및 별표 1의2 규정은 2022.10.20. 시행 예정) <p>유사업종과의 형평성과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사업정지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하고, 물류창고업에 관한 준용 규정을 정비하는 등의 내용으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785호, 2022. 1. 18. 공포, 7. 19. 시행)됨</p> <p>이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과징금의 부과 금액을 법률 개정의 취지에 맞추어 조정하고,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납부 절차 등에 대한 조문 체계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p> <p>물류단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시설부담금 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그 산정기준을 산업 단지 개발 등 유사 개발 사업과 형평에 맞도록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07-19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조 및 별표 1, 제 12조의6 및 제12조의7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가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경우에 대한 2차 위반 시 과징금 금액을 3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상향하는 등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의 위반행위의 종류와 그 정도에 따른 과징금 금액을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한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 관련 규정을 법률 개정애 맞추어 정비함 <p>② 존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징수 절차 등 (제34조제5항·제6항, 제34조의2 및 별표 1의2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종전에는 존치시설의 가치나 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으로 존치시설부담금을 산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존치시설의 용도별 가중치 등을 고려하여 존치시설부담금을 산정하도록 개선하는 한편, 존치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정하는 등 징수 절차 및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함 <p>③ 과태료 가중처분 산정 기준 명확화 (별표 3 제1호나목 신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도한 가중 처분의 누적에 따른 국민의 권익 침해를 해소하기 위하여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1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p>식품 의약품 안전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7.21. 시행) <p>의료기기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환자에게 사망 또는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 책임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의무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의료기기법」이 개정(법률 제18319호, 2021. 7. 20. 공포, 2022. 7. 21. 시행)됨</p> <p>이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하는 대상을 인체이식형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로 정하는 한편,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종류를 의료기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입은 환자에 대한 배상책임 보험이나 이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보험 또는 공제로 정하고, 보험금액을 사망·부상·후유장해 등의 경우로 구분하여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p> <p>* 인체이식형 의료기기: 인공무릎관절, 치과용임플란트 등 인체에 삽입되어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유지되는 의료기기</p>	<p>2022-07-19</p>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p>•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2022.7.28. 시행 예정)</p> <p>품목제조신고나 품목제조신고사항 변경신고를 사실과 다르게 한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와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명령을 위반하거나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는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95호, 2021. 7. 27. 공포, 2022. 7. 28. 시행)됨</p> <p>이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라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으로 정하려는 것임</p>	2022-07-19
개인정보 보호 위원회	<p>•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10.20. 시행 예정, 다만 제16조제1항 및 제62조 규정은 2022.7.19. 시행)</p> <p>신기술 발전에 맞추어 개인정보 파기 방법을 다양화하기 위하여 기술적 특성으로 정보의 영구 삭제가 현저히 곤란한 전자적 파일 형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로 처리하여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법으로 파기하도록 하고,</p> <p>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업무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국제기구와 외국의 개인정보 보호기구와의 교류·협력,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정책·제도·실태 등의 조사·연구 등에 관한 업무를 한국인터넷진흥원이나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p> <p>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령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위반행위자의 현실적인 부담 능력, 위반행위로 발생한 정보주체의 피해 및 배상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추가적으로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p>	2022-07-19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 <p>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사업분야 진출 등 사업재편 활성화 및 투자 지원을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고, 국내복귀기업이 수도권 경제자유구역안에서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 국내기업의 복귀를 지원하는 한편,</p> <p>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기업의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입주가능 시설을 일부 금지시설을 제외하고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을 통해 입주가능 시설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신속한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은 신탁회사가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6조제6항제12호나목 신설) ②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도권 지역의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허용하는 기업에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을 추가함 (안 제26조제8호) ③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의 지원활동을 확대하기 위해 일부 금지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들의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를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방식으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 입주허용 대상을 변경함 (안 제36조의4제2항) <p>※ 의견 제시기간 : 7/21(목)~9/2(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로 제출</p>	2022-07-21
	<p>•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p> <p>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에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 확대하고,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을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공장으로 개선하며, 산업단지 내 공장착공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을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p>	2022-07-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공장의 부대시설에서 판매할 수 있는 판매 품목의 범위를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에서 해당 공장의 생산제품과 결합된 제품으로 확대함 (안 제2조제8호나목) ② 수도권의 자연보전권역에서의 공장설립허용기준을 「수도법」, 「물환경보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환경 관련 법규에 적합한 공장으로 개선함 (안 제16조) ③ 산업단지 내 공장착공이 입주계약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지연된 경우 공장착공 기한 2년에서 3년으로 함 (안 제42조제2항) <p>※ 의견 제시기간 : 7/21(목)~9/2(금)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입지총괄과)로 제출</p>	
환경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p>종전에는 제한물질인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한물질 수입허가를 받고, 유독물질 수입신고를 하던 것을 앞으로는 제한물질 수입허가만 받도록 하여 국민의 제도 이행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화학물질 수입관리 제도를 합리화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제한물질 수입허가로 일원화 (안 제10조제3호 신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독물질인 제한물질의 경우 수입허가와 수입신고를 각각 이행하던 것을 수입허가만 받도록 함 ② 법률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현행화 (안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p>※ 의견 제시기간 : 7/22(금)~8/31(수)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로 제출</p>	2022-07-22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정무 위원회	<p>•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p> <p>현행법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은 개인의 거래정보 등을 명의인의 서면상 동의를 받아 제공한 경우 또는 법원의 제출명령 등에 따라 제공한 경우에 제공사실을 해당 거래정보등의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p> <p>그런데 금융회사등이 통보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사실에는 사용 목적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고 해당 정보를 제공받은 기관에서는 별도의 설명이 없어, 명의인의 동의 없이 거래정보 등이 제공된 경우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모르는 국민들이 불안함을 느낀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공개할 부담이 없어 과도하게 거래정보 등을 요구하기도 한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금융회사등이 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한 이후 거래정보등의 요구자로 하여금 구체적인 사용 목적을 명의인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명의인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거래정보등에 관한 무분별한 요구를 방지하려는 것임 (안 제4조의2제4항 신설 등)</p>	2022-07-19
	<p>•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윤두현의원 등 12인)」</p> <p>최근 한국은행의 지속적인 기준금리 인상으로, 금융회사의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에 기준금리를 반영하는 속도 차이에 따른 예대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소비자의 금융 부담은 증가되는 반면 금융회사에는 과도한 이익이 발생하고 있음</p> <p>이에 은행의 예금금리, 대출금리 및 예대금리차를 1개월마다 공시하도록 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은행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은행 금리를 감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30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p>	2022-07-20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류성걸의원 등 12인)」</p> <p>현행법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총급여 5천5백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해 연 750만원 한도로 각각 10%, 12%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여 주거안정을 지원해 오고 있음</p> <p>그러나 최근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서민주거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고, 현행 월세 공제 기준금액과 공제율, 공제한도가 각각 지난 2014년과 2017년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등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p> <p>이에 총급여액 7천만원을 8천300만원으로, 5천500만원을 6천100만원으로 각각 상향하고,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의 비율을 총급여액 8천3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00분의 12, 6천1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각각 상향하며, 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월세액의 한도도 75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90만원 인상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 (안 제87조제2항 및 제95조의2제1항)</p>	2022-07-18
기획재정 위원회	<p>• 「증권거래세법 폐지법률안(고용진의원 등 12인)」</p> <p>현행법은 증권시장에서 양도되는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 양도될 때 양도가액에 대하여 0.35%의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고,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하게 인정되는 때에는 대통령령에서 종목별로 정한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p> <p>그런데 개정된 「소득세법」(2020. 12. 29. 개정, 2023. 1. 1. 시행)에 따르면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과세 제도를 신설하여 2023년부터 주식, 채권 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예정임. 이는 같은 증권의 거래에 대해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되는 이중과세의 소지가 있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p> <p>이에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하고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로 과세방식을 일원화하되 과세방식의 전환으로 세수가 급격하게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증권거래세를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과세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 투자자를 보호하려는 것임</p> <p>주요 내용으로는</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증권거래세법을 폐지함 ② 주식 등의 양도에 대한 과세방식이 전환됨에 따른 세수 증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증권거래세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하 후 폐지함 (안 부칙 제2조) 	2022-07-20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p>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p>	<p>•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0인)」</p> <p>코로나19를 계기로 배달앱 등을 이용한 배달음식 주문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개인정보 노출에 따른 피해사례도 늘어난 것으로 보임</p> <p>언론보도에 따르면 안심번호(050)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고객이 배달원에게 재연락(콜백)하는 경우 고객의 실제 전화번호가 노출되면서 사적 연락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p> <p>현행법에 따르면 송신인의 전화번호 변작 등을 금지하면서도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음</p> <p>이에 발신번호 변경이 가능한 정당한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온라인플랫폼을 구축·운영하는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 및 노출 방지 등을 위해 발신번호를 변경하여 표시하는 것을 허용해 소비자와 종사자 모두의 안전을 제고하고자 함 (안 제84조의2제2항 단서조항 신설)</p>	<p>2022-07-19</p>
<p>보건복지 위원회</p>	<p>• 「의료용식품에 관한 법률안(전혜숙의원 등 10인)」</p> <p>의료용식품은 환자의 영양 상태를 증진하기 위한 것으로 환자의 의학적 상태에 적합하지 않은 식품을 섭취할 경우 영양 불량상태가 악화될 위험이 있어 일반 식품보다 엄격한 관리가 요구됨</p> <p>하지만 국내 의료용식품의 경우 품목관리, 안전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있어 일반 식품과 동일하게 「식품위생법」으로 관리되고 있음에 따라 의료용식품의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p> <p>이에 의료용식품의 체계적인 관리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의료용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p> <p>주요 내용으로는</p> <p>① 특별한 식이요법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한 의료용식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증진과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함 (안 제1조)</p> <p>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자문에 응하여 의료용식품 정책에 관한 사항, 의료용식품의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심의하기 위하여 의료용식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안 제5조)</p>	<p>2022-07-19</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p>③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영업소별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영업 종류별 또는 영업소별로 신고하도록 함 (안 제7조 및 제8조)</p> <p>④ 의료용식품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품질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의료용식품판매업자에게는 판매관리인을 두도록 함 (안 제12조 및 제13조)</p> <p>⑤ 의료용식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는 자가 의료용식품의 이상 사례를 알게 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함 (안 제16조)</p> <p>⑥ 의료용식품제조업 및 의료용식품판매업을 시작하려는 자에게는 미리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하고, 품질관리인이나 판매관리인에게는 정기적으로 안전위생교육을 받도록 함 (안 제17조)</p> <p>⑦ 의료용식품 및 의료용식품에만 사용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의 제조·사용 및 보존 등에 관한 기준과 규격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평가하여 고시한 사항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9조 및 제20조)</p> <p>⑧ 의료용식품제조업자에게는 그가 제조하는 의료용식품이 고시한 기준 및 규격에 맞는지를 여부를 검사하고 그 기록을 보존하도록 함 (안 제23조)</p> <p>⑨ 유해물질이 검출된 의료용식품이나 위해 발생 우려가 제기된 의료용식품에 대해서는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도록 함 (안 제24조)</p> <p>⑩ 위해 의료용식품 및 기준·규격 위반 의료용식품 등에 대해서는 제조·수입·사용·저장·운반·보존 또는 진열을 하지 못하도록 함 (안 제25조 및 제26조)</p> <p>⑪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의 정지, 영업소의 폐쇄 또는 품목의 제조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와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같은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안 제34조)</p> <p>⑫ 영업정지, 품목 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처분을 같음하여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5조)</p> <p>⑬ 위해 의료용식품의 판매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 영업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판매한 해당 의료용식품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안 제36조)</p> <p>⑭ 의료용식품제조·판매업자에게 영업의 종류별로 단체를 설비할 수 있도록 함 (안 제40조)</p>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환경노동 위원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훈식의원 등 16인)</u>」 <p>현행법은 근로시간에 대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1일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주 5일제 근무로 운영하고 있음</p> <p>그러나 일부 선진국은 이미 주 4일제를 도입하고 있고, 최근 우리나라도 일자리 나누기의 필요성, 여가문화의 확산 등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p> <p>이에 현행 법정근로시간을 주 40시간에서 주 36시간으로 단축하고 그에 맞추어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의 규정을 정비하여 주 4.5일제 근무를 도입함으로써 근로자의 삶의 질 개선 및 고용기회 확대를 도모하려는 것임 (안 제50조제1항, 제51조제1항·제2항, 제51조의2제1항, 제51조의3)</p>	2022-07-15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본회의	7/25(월) 14:00	제5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정치·외교·통일·안보)	
	7/26(화) 14:00	「제6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경제)」	
	7/27(수) 14:00	제7차 본회의 - 대정부질문(교육·사회·문화)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도서관	7/26(화)	「최신외국입법정보」 제199호 발간 - 독일의 장애인 참여 증진 입법례	
	7/28(목)	「헌안, 외국에선?」 발간 - 미국의 미성년자의 형사처벌제도: 우리나라 촉법소년제도와 어떻게 다른가?	
예산정책처	주중	「NABO 경제동향」 7월호 발간 - 소비, 투자, 대외거래, 물가 등 주요 거시경제지표 동향, 생산·고용·인구, 금융·에너지 및 원자재·부동산 동향 분석	
입법조사처	7/29(금) 07:30	제19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 - 인구 위기에 대한 한국 사회의 대응 방향	온라인

【별첨1】 제398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특별위	7/25(월) 10:00	인사청문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남래진) 선출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법사위	7/25(월) 11:00	전체회의	간사 선임의 건
과방위	7/26(화) 미정	전체회의	간사 선임 회의 예정
교육위	7/25(월) 미정	전체회의	간사 선임 회의 예정
국방위	8/1(월) 미정	전체회의	업무보고 / 간사 선임 회의 예정
문체위	금주중	전체회의	간사 선임 회의 예정
농해수위	금주중	전체회의	간사 선임 회의 예정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산자위	7/25(월) 미정	전체회의	위원장 및 간사회의 예정
	금주중	전체회의	업무보고 / 간사 선임 회의 예정
환노위	7/26(화) 미정	전체회의	간사 선임 회의 예정
국토위	7/26(화) 10:30	전체회의	민생 특위 / 위원장·간사 선임 회의 예정
	7/29(금) 10:00	전체회의	법안 심사 예정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25(월) 10:00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 - 헌법적 논의를 중심으로	조용천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25(월) 14:00	인업 결제 대응 및 웹툰 표준 식별체계 도입 법제화를 위한 정책토론회	국회 문화콘텐츠포럼, 조 승래 의원실 등	의원회관 9간담회장
7/26(화) 10:00	공공부문 노동기본권 보장과 ILO핵심협약 준수를 위한 정책 토론회	조경태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7/27(수) 10:00	기업 회생을 위한 정책금융의 발전적 운용전략	윤창현·진선미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7(수) 14:00	AEROSPACE 발전세미나 - 뉴 스페이스 시대에 따른 항공우주력 건설 방향	하영제·신원식 의원실, (사)한국국방MICE연구원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8(목) 10:00	동물의 법적지위와 입법적 변화 모색 국회토론회	박홍근·이현승 의원실, 동물복지국회포럼 등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8(목) 10:00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1년 평가와 과제 - 감독체계개편 및 금융분쟁조정기구 독립성 강화 방안 모색	이용우 의원실, 금융소비자학회 등	의원회관 2세미나실
7/29(금) 10:00	청년창업 활성화 정책토론회	이장섭 의원실	의원회관 2세미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44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도서관	7/22(금)	「최신의국입법정보」 제99호 발간 - 최근 애그플레이션 현황 및 시사점 등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7/19(화) 10:00	국회석유산업혁신포럼 창립식 및 정책포럼	홍석준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7/20(수) 10:00	위기를 넘어 미래로, 민·당·정 토론회 - 과학기술 패권시대의 경쟁 전략	안철수 의원실	의원회관 1세미나실
7/22(금) 10:00	윤석열 정부의 친원전 정책 이대로 괜찮은가?	어기구·양이원영 의원실	의원회관 2소회의실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백대용 | 변호사 T. 02-316-4630 E. dybaek@shinkim.com
- 박현주 (Hyunju Helen Pak) | 외국변호사 T. 02-316-4212 E. hpak@shinkim.com
- 김성범 | 변호사 T. 02-316-4432 E. sbkim@shinkim.com
- 홍정아 (Claudia Hong) | 외국변호사 T. 02-316-4487 E. cahong@shinkim.com
- 방세희 | 변호사 T. 02-316-1773 E. shbang@shinkim.com
- 노지은 | 변호사 T. 02-316-2573 E. jeroh@shinkim.com
- 나인선 | 변호사 T. 02-316-1795 E. isna@shinkim.com
- 최유리 | 변호사 T. 02-316-1748 E. yrchoe@shinkim.com
- 성재열 | 변호사 T. 02-316-1777 E. jysung@shinkim.com
- 조성환 | 변호사 T. 02-316-2596 E. suhcho@shinkim.com
- 김은혜 | 변호사 T. 02-316-1736 E. ehkim@shinkim.com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